

발급번호 : 0507-1846

# 축산물 (돼지) 등급판정확인서



『축산물』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.

2026년 03월 17일

축산물품질평가사 소속 : 충북지원

성명 : 이인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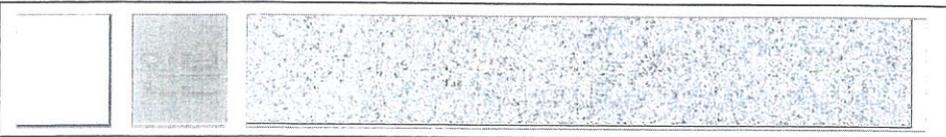


신청인	성명	김남욱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129-81-30202
	업소명	(주)팜스코	업태유형	기타
	주소	경기도 안성시 제2공단4길 33		
도축장	업체명	(주)팜스코	등급판정일자	2026년 03월 16일
	소재지	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청로 54 043-535-3412		

(단위 : 두)

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	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	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
110034200389( 161)	1+	110034200389( 192)	1	110034200389( 215)	1
110034200389( 164)	1+	110034200389( 193)	1	110034200389( 216)	1+
110034200389( 165)	1	110034200389( 194)	1+	110034200389( 218)	1
110034200389( 167)	1+	110034200389( 197)	1	110034200389( 219)	1
110034200389( 168)	1+	110034200389( 200)	1+	110034200389( 220)	1+
110034200389( 169)	1+	110034200389( 201)	1	110034200389( 221)	1+
110034200389( 170)	1	110034200389( 202)	1+	110034200389( 223)	1
110034200389( 173)	1	110034200389( 204)	1	110034200389( 224)	1+
110034200389( 174)	1+	110034200389( 205)	1	110034200389( 225)	1
110034200389( 179)	1	110034200389( 206)	1	110034200389( 226)	1+
110034200389( 182)	1+	110034200389( 207)	1+	110034200389( 227)	1+
110034200389( 185)	1	110034200389( 209)	1	110034200389( 228)	1
110034200389( 186)	1	110034200389( 212)	1	110034200389( 229)	1+
110034200389( 188)	1	110034200389( 213)	1	110034200389( 231)	1
110034200389( 189)	1+	110034200389( 214)	1	110034200389( 232)	1

전체 : 45두 ( 1+ 등급 : 19 1 등급 : 26 2 등급 : 0 등외등급 : 0 )



발급횟수 : 1건 발행일자 : 2026-03-17 11:58:01

※ 이 확인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(www.ekape.or.kr) "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"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납품내역은 『축산물 시행규칙』 제 45조 제 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.

※ 등급판정 결과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고객센터(044-410-7000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 [백상지 80 g/m<sup>2</sup> (재활용품)]



제 충북10-20260316-0011-0 호

# 도축검사증명서

- 가축의종류 : 돼지
- 두수 및 이력번호(소, 돼지, 닭, 오리만 해당합니다) : 65 (110034200389)
- 중량 : 지육 5943 kg, 내장 등 기타 910 kg
- 작업장명 : (주)팜스코
- 검인번호 : 충북10
- 도축일 : 2026년 03월 16일
- 도축의뢰인 : 주소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575-1

성명 김남욱 의뢰업소 (주)팜스코

8. 안전관리인증농장(HACCP)에서 출하된 가축 여부 : [ ]여, [ O]부

9. 수입소의 경우

-수출 국가명 :

-검역계류장 도착일로부터 도축일까지 6개월 경과여부 :

10. 검사불합격 식육의 처분 : 폐기( 13 kg), 식용 외의 용도전환( 0 kg)

『축산물 위생관리법』 제11조 제1항·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.

2026년 03월 16일

검사관 소속 :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 
음성축산물검사소

성명 : 김진아 (서인)

(수의사 면허번호 : 13427 )

